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51 호 2016. 1. 21(목)

공 고

제2016 - 60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2016 - 62호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60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안 제15조 제4호)

-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3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농지지역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 60%로 신설 (안 제41조 제4항 제3호)

나. 군계획위원회의 6개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체에 관한 사항 신설(제50조제6항)

다.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보완 사항 신설(제52조제4항~제52조제8항)

○ 군계획위원회의 서면 심의·자문 가능

-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의 대리참석 가능
-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60일) 및 반복심의 제한 회수(3회) 설정 등
- 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사항(제54조의2)
- 마. 군 계획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조하기 위한 상임기획단 신설 보완(안 제63조 ~ 제65조)
- 바. 기타 군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p730428@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860-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를 “건폐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주무팀장)가 대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⑧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1. 위원회가 네 차례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53조제1항제1호 중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을 “변경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5를 제62조로 한다.

제59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9조를 제66조로 하고, 제58조의2를 제59조로 한다.

제60조를 제67조로 하고, 제58조의3을 제60조로 한다.

제61조를 제68조로 하고, 제58조의4를 제61조로 한다.

제62조 다음에 “제8장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삽입한다.

제8장에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

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5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66조 앞에 “제9장 보칙” 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 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농림지역 : <u>2만제곱미터</u> 미만</p> <p>5. (생 략)</p>	<p>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3만제곱미터</u> -----</p> <p>5. (현행과 같음)</p>
<p>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p> <p>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u>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1. (생 략)</p> <p>2. (생 략)</p> <p><신 설></p> <p>⑤ (생 략)</p>	<p>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농지법 시행령</u>」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0조(구성) ① ~ ⑤ (생 략)</p> <p><신 설></p>	<p>제50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제52조(회의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제52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주무팀장)가 대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⑧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위원회가 네 차례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53조(분과위원회) ① ----- 각 호의

-----.

1 _____

관한 사항

2 _____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변경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선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신 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 ~ 제58조의5 (생략)

제59조 ~ 제62조 (현행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와 같음)

제8장 보칙

<삭 제>

제59조 ~ 제61조 (생략)

제66조 ~ 제68조 (현행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장 군계획상임기획단

<신 설>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신 설>

임기제공무원(석·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 설>

제65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9장 보칙

남해군 공고 제2016 - 62호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2016년 1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을 위하여 평가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개요

- 가. 계 획 명 : 남해군관리계획결정(변경)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
- 다. 면 적 : 72,214㎡(전기공급설비 58,000㎡, 진입도로 14,214㎡(L=1,620m, B=4m))
- 라. 사업시행자 : 남해제1태양광발전소, 남해제2태양광발전소

2. 공개개요

-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 나. 공개장소 : 남해군홈페이지(www.namha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다. 공개기간 : 2016.01.18. ~ 2016.02.01.(14일 이상 게재)
- ※ 공개기간 내에 의견 있으신 분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공개기간내 별첨 양식에 의한 서면 제출

나. 제출장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 기타 상세사항 및 문의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055-860-3414)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	
사업자	남해군	
의견제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